

영등포구의회
제20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

2017. 5. 16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

1. 경 과

의안 제209호로 2017년 5월 11일 김재진, 김용범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,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다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(안 제5조)
- 라.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등(안 제6조 ~ 안 제8조)
- 마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 제5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, 제6조(실태조사), 제7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), 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(학교의 설립 등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(2017. 4. 27. ~ 5. 4.)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, 자립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의 편견 또는 일탈의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1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 제정내용으로는

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하였으며,

지원시책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며,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”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으며,

지원내용으로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,

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우리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며,

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·경찰서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함.

- 서울특별시교육청 “2016년도 서울교육통계연보”에 따르면 2015학년도 기준 우리구에서 발생한 학업중단 학생 수는 총 322명(1.03%)이며, 질병이나 유학 또는 해외출국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한 실질적인 학업중단 학생 수는 ‘학교 부적응 30명’, ‘제적 2명’으로 조사¹⁾되었으며,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학업중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
- 학교 밖 청소년은 무계획적인 학업중단 및 정보의 부재로 학교 밖 적응에 애로점이 많으므로 이들에게 학업복귀, 진로·진학 및 직업훈련·취업 연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
 무엇보다도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는 학교를 부적응하는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시하여 사후대책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1) 서울특별시교육청 「2016 서울교육통계연보」

- 학업중단자 변동사항조사 기준기간 : 2015.3.1. ~ 2016.2.29.

- 학업중단은 청소년들 개개인의 장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,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²⁾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근거가 되고, 건전한 사회생활이나 자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.

2) 교육부 ■ 여성가족부 「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」 (2013. 11.)

관 련 법 령

■ 『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』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청소년"이란 「[청소년 기본법](#)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"학교 밖 청소년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 - 가. 「[초·중등교육법](#)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[같은 법 제14조제1항](#)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 - 나. 「[초·중등교육법](#)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[같은 법 제18조](#)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 - 다. 「[초·중등교육법](#)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3. "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"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, 교육지원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[청소년 기본법](#)」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
 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 4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5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
 6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
 7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[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](#)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[여성가족부령](#)으로 정한다

제7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)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(이하 "지원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
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4.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
-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·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상담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, 진로상담,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[여성가족부령](#)으로 정한다.

제9조(교육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[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](#)의 초등학교·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
2. [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3](#)의 대안학교로의 진학
3. [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7조의2](#)에 따라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
4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[여성가족부령](#)으로 정한다

제10조(직업체험 및 취업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
2.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
3. 직업소개 및 관리
4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 및 태도를 습득·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[여성가족부령](#)으로 정한다.

제11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, 문화공간지원, 의료지원,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, 법률교육,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[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](#)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
 2. [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](#)제8호의 청소년단체
 3.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[제8조부터 제11조](#)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
 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·협력
 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 4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
 5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 6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
7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-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, 지정기간, 지정절차,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한다.

■ 『초·중등교육법』

제4조(학교의 설립 등)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·설비 등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사립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2.3.21.]